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2013년 6월 25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3일(月) 마포구청장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3년 6월 7일(金)

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10466호, 2011.3.29. 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39호, 2012.7.9. 개정)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서울시 조례 제5362호 2012. 9. 28. 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마포구 조례 제876호 2012. 9. 27. 개정)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341호. 2012.7.30. 개정)

5.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11.3.29.)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2.7.9)으로 2012.9.2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안전행정부와 서울특별시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에서 시장 권한사항으로 상향된 우리 구 조례 내용은 삭제하고,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된 내용은 본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은 물론 광고물별 표시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일반 생활형 광고물의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각종 생활민원의 대상이 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상향조정하여 옥외광고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6. 주요개정내용

- 1)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 (안 제6조)
- 2)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가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3) 자율관리협정을 체결자들 간의 법에 따른 자율적 기구인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4)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를 정하고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은 안 제8조 적용 (안 제9조)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시 추진 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함 (안 제11조)
- 6)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맞추어 구체화(안 제13조)
- 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기준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형평성을 확보 하며, 대형화, 상업적인 광고물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인상 조정 (안 제19조, 제23조, 제24조)

7. 검토의견

1) 우리 구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변경 주요내용

가. 주요 조례 폐지 내용을 보면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의 허가신청 및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을 포함한다는 규정
 - 제4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 : 삭제
- (2) 상위법 근거규정
 - (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규정
 -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 삭제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처리
 - 제35조(과태료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징수절차 삭제
=> 개정안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3) 구청장 권한사항에서 시장 권한사항으로 위임되어 서울시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삭제함
 - ①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조례(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표시방법의 완화) : 삭제

②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 삭제

③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 삭제

나. 주요 조례 변경내용

(1)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구 조례에서 정함

- 개정안 제4조 1호~3호 : 변경사항(타사광고,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 등)은 허가사항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신고대상으로 변경

(2)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구 조례에서 정함

- 개정안 제5조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연장허가로 함(옥외광고물 등 시행령 제10조 규정)

(3) 안전행정부 조례개정 표준안(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름

- 개정안 제14조~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그 기준,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업무절차 및 검사요령 등)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인원을 구체화하여 정리함

다. 주요 조례 신설내용

(1)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① 개정안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 신설

영 제2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용도지정과 간판표시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설치위치, 수량, 종류, 규격 등 배치계획)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② 개정안 제7조(자율관리 협정),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신설
경관법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규정에 따라 간판에 대한 경관사업 추진의 근거 조항=>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6조 ~ 제28조까지에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③ 개정안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 신설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 및 세계화촉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외국어 병기 지역을 지정토록 함
- ④ 개정안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제6항 : 안전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 : 신설

(2)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위임함

- 개정안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 신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게시대 특성과 유형이 달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음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함

(3) 부패영향평가결과(감사담당관)에 따른 위원의 해촉규정 마련

- 개정안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신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 기준 준수

개정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불필요한 대형 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광고물을 구체화함으로써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광고물별 표시방법을 유지토록 구체화함

3)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따라 인상

가. 개정안 제1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불필요한 대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광고물을 구체화하고,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일부인상

나. 개정안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일부인상(안행부 표준안)

※ 개정안 제23조(수수료)

: 현행대로 유지함(대부분 일반 생활형 광고물임)

4) 옥외광고물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전도 검사기관으로 선정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안전도 검사장비와 인력 등 충분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 안전도 검사기관 기준에 적합할 때 검사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2)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는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시공에 필요한 필수 검수 과정으로 간판의 수준 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겠지만, 광고물 소유자 측에서 검사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되면, 검사비용 절감을 위해 자칫 검사비가 저렴한 형식적인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히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실제 검사수수료는 예산편성 초기부터 물가 정보 및 물가상승률 등 충분한 사전 조사 후 적정한 광고물등 검사 안전도 검사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특히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시에는 명확한 기준과 사전예고 등으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2013.3.21.~4.10.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옥외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존의 현실화하고 기존 자치구 조례보다 대폭상향

하여 불법광고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우리 구에서도 개정 조례안을 2013.4.18. 제5차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비교하여 우리 구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수수료는 물가안정에 영향이 없도록 현행대로 유지하고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불법대형 광고물 제재를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 한도에서 약 6% 정도 일부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고물 등 특성상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 물가에는 크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광고물별 표시방법 등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수료 납부는 수입증지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현실에 맞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고, 특히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을 받을 수 있는자 및 업무의 위탁과 기준절차 등 안전도 검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나, 향후 안전도 검사수수료 책정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저가의 형식적인 안전도 검사로 주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등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8.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경관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개정) 제16조
- 행정대집행법(법률 제9968호, 2010.1.25, 개정) 제2조
- 조례안 약칭 및 조례안 신·구 대조표 1부

[관련 법 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

· 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10]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한다.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0.10>]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10.10>]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 2012.9.28.] [서울특별시조례 제5362호, 2012.9.28., 제정]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당해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 수량을 건물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4.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
 5. 제11조에 따른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
 6.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9.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소의 표지판
-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자사광고에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는 광원이 노출되거나 점멸하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막·연가안개 등 기체 또는 빛·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쓰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 가. 제5항에 따른 연립형간판
 - 나.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당해 건물명 표시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낙뢰의 우려가 있거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④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적용하고,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으로써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광고물등 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산정하여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⑤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여건·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며,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재질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에 한한다)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10호의 경우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가. 차양면의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 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4. 건물의 주된 도로와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이 아닌 벽면으로서 3층 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의 4층 이상에는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가.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건물 가로 폭 이내, 세로 8미터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등의 돌출폭은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8.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 다. 도료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당해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10.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인증업소, 가격 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가.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수량·규격·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가로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 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의 양쪽의 어느 한 면에 가로 45센티미터 이내, 세로 1.5미터 이내(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소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여야 한다.
2. 제3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옆면 또는 뒷면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하나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크기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써 최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당해 벽면의 가로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은 제외한다)
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돌출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미터 이내,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돌출간판 게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3.5미터 이내로써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와 화면변환·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네온류·전광류의 사용제한을 하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의 광고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영 제15조제6호나목의3)·다목·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면적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안에는 하나에 한한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표시위치·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휴지통, 벤치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을 표시하는 공공시설물은 시장 또는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 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이 액정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형태·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 설치·관리되는 시·구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이용·지정계시대이용·지주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이용 현수막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행사내용에 한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계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또는 제4항에 따른 가림막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원색 또는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계시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거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 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9조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공사개요·시공사·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이내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 다.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2.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개소까지 게시할 수 있다.
2.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점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중(空中)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등의 공공목적 내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내용에 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묶어 표시할 수 있다.
4.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하, 수량은 4개 이하여야 하고,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하거나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매달아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 또는 지면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30미터 이상 5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에는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워서 아니 된다.

② 영 제20조에 따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0미터 이하로써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3.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 제15제3호·제7호·제8호 및 제9호를 준용한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영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벽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전단의 배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아니 된다.
2.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쪽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 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바닥
 5.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 ②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내용은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 2012.7.30.] [서울특별시조례 제5341호, 2012.7.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 및 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 2."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의 경관계획에 따른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주민이 제안 또는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 3."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 3.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 4.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 구청장은 디자인 심의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디자인서울의 이념·비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서울의 중요정책 방향제시 및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자인서울에 대한 소통전략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디자인서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디자인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조형 예술·색채·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신설 2009.7.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신설 2009.7.30>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3개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실무위원회

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공공건축물 분야 제외)

나.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라.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심의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

2. 제2실무위원회 : 별표 1 중 제3호 공공건축물 분야

3. 제3실무위원회 :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자치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실무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실무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341호, 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0.7.26] [법률 제9968호, 2010.1.25, 타법개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